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 ABA-RC, BBB, CNA, CNA-RB, CND, CNE, DDA-RA, DJA-RA, DJA-RB, ECN, FFA, FFA-RA, IGK-RC, IPD-RA, JFA-RA, KEA-RA, KGA-RA
담당 사무실: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Chief Operating Officer
관련 자료 s:	<i>Annotated Code of Maryland</i> , Business Regulation Article, § 6-101; Criminal Law Article, § 13-1803, § 13-1813; <i>Montgomery County Code</i> , §30-4(b)

학교 관련 모금활동(School-Related Fund-Raising)

I. 목적

이 정책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내에서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를 대신한 학교 관련 모금활동의 절차 개요를 제공하여, 교습시간을 지키고, 학생의 안전을 최대화하며 적절한 책임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교육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정의

- A. *학부모와 커뮤니티 단체(Parent and community groups)*에는 Parent Teacher Associations, 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s, foundations 과 booster clubs 를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 B. *학교 후원(School-sponsored)*은 교직원이 학교 담당자로 배정된 활동으로 학교장/또는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의 부교육감보가 승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III. 행정절차

A. 승인(Approval)

- 모든 MCP, 학교,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의 모금활동은 예정, 광고, 실행 전에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 a) 학교장 또는 대리인이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의 모금활동을 승인합니다.
 - b) OSSI의 부교육감보(associate superintendent)는 여러 학교 또는 교육구 전체 학생 기관의 모금활동을 승인합니다.
 - c) 최고행정담당관(chief operating officer)은 MCPS 교직원 단체의 모금활동을 승인합니다.
2.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의 모든 모금활동은 MCPS 교직원 담당자/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B. 선전자료(Promotional Materials)

1.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의 모금활동의 선전자료에는 다음의 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물품 또는 서비스는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Board), 교육감 또는 이 학교의 후원 및 지지를 받은 활동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These products or services are neither sponsored by nor endorsed by the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Boar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or this school.)”
2. 선전자료의 배부는 Board Policy CNA, *Informational Materials and Announcements*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 학생의 참여와 학생의 안전

1. 학생은 누구도 억지로 어떠한 모금행위에서의 참여 또는 기여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2. 학생의 안전을 위해, 모금활동에는 학생의 집집마다 방문 또는 길에서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학생이 모금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의 나이에 맞는 성인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D. 교습시간의 사용

1. 모금활동을 위해 교습시간을 사용할 경우, 교습목적과 일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학부모와 커뮤니티 단체는 특히 매일의 판매 주립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습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교습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상 판매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모금활동을 계획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E. 자선활동(Charities)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는 자선 목적으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품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1. 후원 교직원은 자선활동의 합법성과 혜택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은 이 요건 또는 MCPS 규정 또는 교육위원회 정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모금활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선을 위한 모금활동의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자선 기관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 책임

1. 학교 또는 학교 후원 단체가 모은 금액은 학교 개별활동계좌 (Independent Activities Fund)에 예금하고 MCPS 재정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2. 학교와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는 예산 수집과 제출에 관련한 적절한 계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선전자료에는 모금하는 기금의 목적과 모금활동을 통한 모든 수익은 모두 모금 목적을 위해 책정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지출해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선전자료에 또한, 목표 금액 이상의 기금이 모금될 경우의 2차 기금 혜택 대상을 명시할 것을 권합니다.

G. 학교 지도부와의 협력

공동 목표의 협력육성을 위해, 모금활동을 하는 학부모 또는 학교 또는 학교를 대신한 커뮤니티 단체의 지도부는 학교장과 협력하여 Board Policy CND, *School-Related Fund-Raising* 에 따라 기금을 모집하고, 모금활동은 교습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학교 후원 모금활동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학부모 지도부 또는 커뮤니티 단체에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H. 물건 구입 또는 기부물품 수락

1. 학교의 독립적 활동 예산이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때 사용될 경우, Division of Procurement 가 책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 기부물품을 받는 절차는 MCPS Regulation DJA-RB, *Purchases of Materials and Equipment Using Nonappropriated Funds and Acceptance of Donated Items*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정책 CNE, *Facility Improvements That Are Not Funded With Montgomery County Revenues* 에 해당하는 캐피탈 향상을 위한 Montgomery 카운티 정부 이외의 예산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게임활동

1. 학부모 또는 커뮤니티 단체가 MCPS 를 대신하여 빙고 또는 래플 등의 게임활동을 계획할 경우, Maryland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라이선스 또는 허가증을 유지 및 전시해야 합니다.
2. 학교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단체는 라이선스나 허가증 없이 래플이나 빙고와 같은 게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13 년 6 월 20 일; 2013 년 12 월 20 일 갱신.